

『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4년 3월 일

##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###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#### 1. 제안이유

-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을 인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지방세수를 증대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- 2000cc 이상 6인승 이하 비영업용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시 채권매입요율을 인하함(안 별표 1)
  - 배기량 2,000cc이상 다목적형 :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→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. 16(일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(참조 :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, 전화032-440-6212, 팩스 032-440-876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| 제출자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조항 | 찬반여부 및 사유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|
| ○주 소 :<br>○성 명 :<br>○연락처 : |       |           |    |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### 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#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발의연월일 : 2014. 3. .

발 의 자 : 홍성욱, 김병철  
외 찬성의원 6인

## 1. 제안이유

-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지방세수를 증대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2000cc 이상 6인승 이하 비영업용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의 신규등록 시 채권매입요율을 인하함(안 별표 1)
  - 배기량 2,000cc이상 다목적형 :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→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채사항
- 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##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(제9조제2항 관련)

| 매 입 대 상                     | 매 입 기 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1. 자동차 신규등록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가.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① 1,500cc이상                 | 취득세 과표의 4/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② 2,000cc이상                 | 취득세 과표의 5/100<br>(단, 다목적형은 취득세 과표의 4/100) |     |
| ③ 단, 승용자동차 중에서<br>7~10인승 이하 | 대당 39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나.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11인승 이상                     | 취득세과표의 1.5/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다.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1,000cc이상                   | 취득세과표의 1.5/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2. 자동차 이전등록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(사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)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가.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① 1,500cc이상                 | 취득세과표의 3/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② 2,000cc이상                 | 취득세과표의 5/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나.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1,000cc이상                   | 취득세과표의 1.5/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다.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1,000cc이상                   | 취득세과표의 1.5/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
| 매 입 대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매 입 기 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<p>3. 각종 허가</p> <p>가. 도로하천(소하천포함)·구거부지<br/>공유수면 점사용허가</p> <p>나. 토지형질 변경허가<br/>① 농지 (전·답)<br/>② 산임야, 잡종지등 기타지목</p> <p>다. 골프장 등록</p> <p>4. 건설공사도급계약(「건설산업<br/>기본법」), 용역계약, 물품<br/>구매·수리·제조계약<br/>(자치단체가 전액출자출연법인의 계약<br/>체결 포함)</p> | <p>점·사용료부과액의 5/100<br/>(점·사용 기간이 1년이상의 장기허가시는<br/>최초 점·사용료 징수시에만 점·사용료<br/>부과액의 5/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<br/>을<br/>매입함)</p> <p>m<sup>2</sup>당 1,500원<br/>m<sup>2</sup>당 3,000원<br/>m<sup>2</sup>당 60원</p> <p>대금청구 금액의 2/100<br/>(다만,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<br/>경우는 제외함)</p> |     |

※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,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,000원 단위로 계산한다.

##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

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관계 법령          | <div style="margin-left: 40px;"> 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공기업법<br/> ○ 제19조 제3항(지방채 등)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100px;">“내용은 별지 작성”</div> |
| 관련 법규<br>정비 대상 | “해당 사항 없음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관련 자료          |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 관계법령 발췌사항

## [지방공기업법]

제19조(지방채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1. 경상적(經常的)인 운전자금(運轉資金)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2. 회전기금(回轉基金)의 재원(財源)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3.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

②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또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(이하 "대도시"라 한다)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·허가·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
2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(出捐)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
3.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한 법인과 용역 계약 또는 물품 구매·수리·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

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, 매입 대상별 금액, 채권등록 방법, 이율 및 상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.

##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

### 제9조 (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)

- ①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, 각종허가, 건설공사도급계약, 용역계약, 물품구매·수리·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1과 같다.
- ③ 「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(이하 “도시철도채권”이라 한다)를 매입한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요인

- 재정수반사항 없음.

## 2. 비용추계서 첨부 근거규정

-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## 3. 미첨부 사유

- 본 개정안은 「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」 별표 1 중 채권매입요율을 인하하는 것임에 따라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미첨부함.  
⇒ 채권매입요율 인하에 따른 신규 차량등록 대수 증가(28.4%)로 채권매입액 증가(4억여원) 및 연간 32억여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됨

## 4. 작 성 자

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의원